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허4840 등록무효(특)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철, 김정현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대한

담당변리사 장호진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2. 8. 5. 2020당106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1314742호의 청구항 2항, 3항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 1) 발명의 명칭: 테라스를 갖는 아파트 구조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7. 16./ 2013. 9. 27./ 제10-1314742호
- 3) 청구범위

【청구항 1】다수의 층이 종 방향으로 반복 배열되고, 상기 각 층에 마련된 단위세대는 거실에 인접하게 배치되며 적어도 일 측면이 외부를 향하도록 배치된 테라스를 구비하는 아파트 구조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각 단위세대에 구비된 테라스는 인접한 위아래 층의 단위세대에 구비된 테라스와 상하방향으로 중첩되지않게 배치되고, 또한 각 단위세대의 테라스는 두 개 층의 층고에 대응하는 높이를 갖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거실의 상부에는 위층의 테라스가 위치하며, 상기테라스의 상부에는 위층의 건물 외벽 바깥의 빈 공간영역(void)이 위치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아파트 구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거실과 테라스, 빈 공간영역은 다른 용도를 갖

는 실내공간에 인접하게 배치되되, 상기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공간은 각 층별로 그 배치위치가 고정되는 한편(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거실과 테라스, 빈 공간영역은 각 층별로 시계방향 또는 반 시계방향으로 그 배치위치가 순차적으로 변동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아파트 구조.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공간은 주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아파트 구조.

【청구항 4】 내지 【청구항 8】(삭제)

4) 발명의 주요 내용

과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아파트 구조에 관한 것으로, 특히 각 단위세대의 테라스가 두 개 단위층의 높이를 합친 것에 상응하는 높은 층고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종래 아파트 구조가 갖는 획일적 구성요소를 탈피하여 밀폐된 실내공간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개방감을 부여할 수 있고, 단순한 직육면체의 입면구조를 벗어난 다채로운 아파트 형상을 연출함으로써 단조로운 도시 디자인을 개선하는 동시에 아파트의 가치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도록한 층고가 높은 테라스를 갖는 아파트 구조에 관한 것이다.

[H] 배경 기술 및 문제점

[0006] 아울러 종래의 아파트 구조는 모든 전용공간이 동일한 천정고(반자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감이 단조롭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적은 평형대나 큰 평형대나 항상 같은 천정고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에서는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는 공간감의 상실을 가져오게 된다.

대 **기술적 과제**

[0008] 따라서 본 발명은 위와 같이 종래의 아파트 구조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안출된 것으로서, 단위세대에서 거의 유일한 외부공간인 테라스를 활용하여 답답한 실내공간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개방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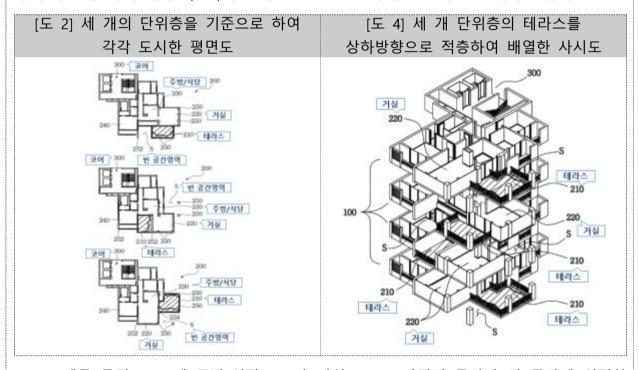
때 **효과**

[0017]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가진 본 발명의 아파트 구조는 각 단위세대에 마련된 테라스의

층고를 두 개 단위층의 높이를 합친 것에 상응하는 높은 층고를 가지기 때문에, 공간감을 얻기 힘든 밀폐된 실내공간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이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아파트 구조는 거실의 상부에 위층의 테라스가 위치하고, 상기 테라스의 상부에는 위층의 건물 외벽 바깥의 빈 공간영역이 위치하도록 배치함으로써, 각 단위세대 간에 있어서 거실의 층간 소음문제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으며, 테라스에서의 사생활 보호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마 발명의 구체적 내용

[0025] 도 2에 도시된 것처럼, 본 발명에 따른 아파트(10) 구조는 어느 한 단위층(100)에 있는 단위세대(200)의 테라스(210)가 이와 위아래 층으로 인접한 다른 단위세대(200)에 각각 구비된 두 개의 테라스(210)와 상하방향으로 중첩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0026] 예를 들면, 도 2에 주방/식당(230)과 거실(220)로 마련된 공간과 이 공간에 인접한 테라스(210)가 이루는 공간을 함께 묶어서 보면, 맨 아래층(하측 평면도)의 테라스(210) 공간에 해당되는 그 위층(중간 평면도)의 공간은 외벽에 의해 제한된 바깥쪽의 빈 공간영역 (void, S)이기 때문에 맨 아래층 테라스(210)는 그만큼 높은 층고, 즉 두 개 단위층(100)의 높이를 합친 정도의 층고를 가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중간층의 테라스(210) 역시 맨 위층 (상측 평면도)의 대응하는 부분이 빈 공간영역(S)이 되기 때문에 두 개 단위층(100)의 높이를 합친 정도의 높은 층고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층별을 기준

으로 하여 상기 거실(220)과 테라스(210), 빈 공간영역(S)은 서로 그 위치가 어긋나게 배치되되, 상기 거실(220)의 상부에는 위층의 테라스(210)가 위치하며, 상기 테라스(210)의 상부에는 위층의 건물 외벽 바깥의 빈 공간영역(S)이 위치한다. 또한, 상기 거실(220)과 테라스(210), 빈 공간영역(S)은 주방/식당(230)에 인접하게 배치되는데, 상기 주방/식당(230)은 각층별로 그 배치위치가 고정되는 한편, 상기 거실(220)과 테라스(210), 빈 공간영역(S)은 각층별로 반 시계방향으로 그 배치위치가 순차적으로 변동한다. 한편, 본 발명에 따른 아파트 구조는 상기 실시예의 설명에 국한하지 않으며, 예컨대 상기 주방/식당(230)은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 즉, 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방 중 어느 하나이어도 무방한데, 각 층별로 그 배치위치가 고정된다는 점에서 아파트 전체를 관통하는 배관 등이 설치되는 주방/식당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거실(220)과 테라스(210), 빈 공간영역(S)의 배치위치도 각층별로 반 시계방향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으며, 예컨대 도 2에 도시한 아파트 구조와 마주보거나 대칭되는 구조의 아파트에서는 상기 배치위치가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4호증의 1, 2)

2009. 8. 31. 인터넷 사이트²⁾에 공지³⁾된 '쿠지말파 타워'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⁴⁾ 및 도면⁵⁾은 다음과 같다.

가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아파트의 바닥은 공중 정원의 아래에 침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낮은 층을 기준으로 90도씩 회전한다. 회전하면 쌓아 올라가는 아파트의 나선형 배열은 녹지 공간을 3배 높게 만들어줘 빛의 투과율을 극대화시키고 나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갑 제4호증의 1의 7면 하단 1행~4행).

침실과 스튜디오의 상부에 위층의 테라스¹⁾가 위치하고 있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갑 제4호 증의 1의 19면 2번째 도면).





2) 선행발명 2(갑 제5호증)

2008. 9. 14. 인터넷 사이트⁶⁾에 공지된 '레너드 스트리트 56 빌딩'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인용하지 않으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3) 선행발명 3(갑 제6호증)

2009. 12. 14.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09-0127724호에 게재된 '가상 베이 평면 개념에 의한 복증형 마당을 구비한 공동주택형 건물구조'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¹⁾ 이 사건 특허발명의 '테라스'는 아파트 구조의 외부에 대해 일정 부분이 개방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코니나 베란다도 '테라스'의 범주에 포섭된다(갑 제3호증 [0030]). 따라서 갑 제4호증의 1, 2의 정원이 설치되는 외부 공간도 '테라스'에 포섭되는 것이므로 이를 '테라스'로 통칭한다.

²⁾ https://www.plataformaarquitectura.cl/cl/02-21034/torre-cuajimalpa-meir-lobaton-corona-kristjan-donaldson?ad_medium=gall erynext_project=no

³⁾ 갑 제4호증의 1의 공지 시점(2009. 8. 31.)은 갑 제4호증의 2의 공지 시점(2009. 6. 19.)보다 늦으므로 갑 제4호증의 1과 갑 제4호증의 2는 모두 갑 제4호증의 1의 공지 시점인 2009. 8. 31. 공지된 것으로 기재하였다.

⁴⁾ 갑 제4호증의 1, 2의 번역문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⁵⁾ 갑 제4호증의 1 도면 각 구성요소의 명칭은 갑 제4호증의 2 11면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을 참조하였다.

⁶⁾ https://www.dezeen.com/2008/09/14/56-leonard-street-by-herzog-de-meuron/

가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가상 베이 평면 개념에 의한 복층형 마당을 구비한 공동주택형 건물구조에 대한 것으로서, 좀 더 상세히는 단위세대와 이에 상하방향으로 인접한 단위세대간에 공간을 주고받거나 공유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개방형 실외공간인 복층형 마당을 형성할 수 있도록 된 새로운 형태의 공동주택형 건물구조에 대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9>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아파 트의 구조를 보여준다. 도시된 바와 같이 단위 세대가 길이방향으로 배치된 직선형 공동주택에 서, 기준층(I)의 좌측으로부터 세 번째에 형성된 베이인 제1 베이(A)를 이에 인접한 상부층인 제 2층(Ⅲ)의 슬래브를 개방하고, 실외 측에 면한 벽을 개방하여 기준층(I)용 마당(G1)을 형성하고, 제2층(Ⅲ)의 좌측에서 6번째 베이인 제2 베이(B)를 이에 인접한 상부층인 제3층(Ⅲ)의 슬래 브를 개방하고 실외 측에 면한 벽을 개방하여 제2층(Ⅲ)용 마당(G2)을 형성한 것이다. 한편, 제



3층(Ⅲ)용 마당은 그 상부층에 해당하는 다음 단계의 기준층(Ⅰ)의 상기 세 번째 베이인 제 1베이(A)와의 사이의 슬래브와 실외벽을 개방하여 제3층용 마당(G1)을 형성한다.

<13>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준층의 단위세대들은 현관부 근처 제1베이(A)는 슬래브를 개방하여 인접한 아래층 단위세대에게 복층형 마당(G2)을 제공하고, 거실부 근처의 제2베이(B)는 인접한 위층의 단위세대의 슬래브를 개방하여 복층형 마당(G1)을 제공받는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피고는 2022. 4. 1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 3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2당1067로 심리한 다음, 2022. 8. 5. 이 사건 제 1, 2, 3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3 또는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 3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2, 3항 발명 부분은 위법하다.

- 1)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거실'의 상부에 테라스가 위치하고, '거실'의 하부에는 빈 공간영역이 위치함으로써 '거실'에서의 층간 소음 문제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으나, 선행 발명 1은 '거실'의 상부에 테라스가 위치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거실'에서의 층간 소음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없다.
- 2)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거실과 테라스 및 빈 공간영역이 각 층별로 고정된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에 인접하게 배치되면서 해당 실내 공간을 중심으로 각 층별로 순차적으로 변동되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평면 구성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건축 시공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한 층에 여러 세대를 연접하여 배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선행발명 1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 3)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 역시 인정된다.

나. 피고

이 사건 제2, 3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2, 3항 발명 부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2, 3항 발명 부분의 위법 여부

- 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1)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대비

구성 요소	이 사건 제2항 발명	선행발명 1
	다수의 층이 종 방향으로 반복 배열되	▶ 다수의 층의 종 방향으로 반복 배열되고,
	고, 상기 각 층에 마련된 단위세대는 거	각 층에 마련된 단위세대는 거실에 인접하
	실에 인접하게 배치되며 적어도 일 측면	게 배치되며 적어도 일 측면이 외부를 향
1	이 외부를 향하도록 배치된 테라스 를 구	하도록 배치된 테라스 를 구비하는 아파트
	비하는 아파트 구조에 있어서,	가 도시되어 있다(19면의 2번째 도면 및
		20면의 도면).
	상기 각 단위세대에 구비된 테라스는 인	▶ 아파트의 바닥은 공중 정원의 아래에 침
	접한 위아래 층의 단위세대에 구비된 테	실을 배치하는 방식 으로 낮은 층을 기준으
2	라스와 상하방향으로 중첩되지 않게 배	로 90도씩 회전한다. 회전하면 쌓아 올라가
	치되고, 또한 각 단위세대의 테라스는 두	는 아파트의 나선형 배열은 녹지 공간을 3
	개 층의 층고에 대응하는 높이 를 갖되,	배 높게 만들어줘 빛의 투과율을 극대화시
	상기 거실의 상부 에는 위층의 테라스가	키고 나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7
	위치 하며, 상기 테라스의 상부 에는 위층	면 하단 1행~4행).
	의 건물 외벽 바깥의 빈 공간영역(void)	▶ 침실의 상부에 위층의 테라스가 위치 하
3	이 위치 하는 것	고, 테라스의 상부 에는 위층의 건물 외벽
		바깥의 빈 공간영역(void)이 위치 하는 것으
		로 도시되어 있다(19면의 2번째 도면 및
		20면의 도면).
	상기 거실과 테라스, 빈 공간영역은 다	▶침실과 테라스, 빈 공간영역과 인접한 실
4	른 용도를 갖는 실내공간에 인접하게 배	내 공간은 각 충별로 배치위치가 고정되어

		치되되 상기 다른 용도를 간는 식내공	있지 않게 배치 되어 있다(19면의 2번째 도
		간은 각 충별로 그 배치위치가 고정되는	
		한편,	
		상기 거실과 테라스, 빈 공간영역 은 각	▶ 침실, 테라스, 빈 공간영역이 각 층별로
	_	층별로 시계방향 또는 반 시계방향으로	시계방향 또는 반 시계반향으로 배치위치
	5	그 배치위치가 순차적으로 변동하는 것	가 순차적으로 변동 되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19면의 2번째 도면 및 20면의 도면).

2)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아파트 구조에 관한 것으로, 양 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다수의 층이 종 방향으로 반복 배열되고, 각 층에 마련된 단위세대는 거실에 인접하게 배치되며, 적어도 일 측면이 외부를 향하도록 배치된 테라스[테라스]⁷⁾를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3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테라스, 거실 및 빈 공간영역(void)의 배치 구조에 관한 것으로, 양 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는 각 단위세대에 구비된 테라스가 인접한 위아래 층의 단위세대에 구비된 테라스[테라스]와 상하방향으로 중첩되지 않게 배치된다는 점과 테라스[테라스]의 상부에는 위층의 건물 외벽 바깥의 빈 공간영역(void)이 위치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의 각 단위세대의 테라스는 '두 개층의 층고'에 대응하는 높이를 갖는 반면,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각 단위세대의 테라스는 '세 개 층의 층고'에 대응하는 높이를 갖는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과

⁷⁾ 대괄호 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이다. 이하 같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2, 3에서 '거실' 상부에 위층의 테라스가 위치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에서 '침실' 상부에 위층의 테라스가 위치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다) 구성요소 4, 5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4, 5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거실[침실], 테라스 및 빈 공간영역(void)의 배치 구조에 관한 것으로, 각 층별로 거실[침실]과 테라스, 빈 공간영역(void)이 시계방향 또는 반 시계방향으로 그 배치위치가 순차적으로 변동[90도씩 회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 4, 5의 거실과 테라스, 빈 공간영역 (void)은 각 층별로 배치위치가 고정된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에 인접하게 배치되어 그 배치위치가 변동되는 것인 반면,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침실과 테라스, 빈 공간영역(void)은 공용 공간에 해당하는 '코어' 부분8)을 중심으로 그 배치위치가 변동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

3) 차이점의 용이 극복 여부

가) 차이점 1 검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각 단위세대의 테라스가 '두 개 층의 층고에 대응하는 높이를 갖는 것'과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각 단위세대의 테라스가 '세 개 층의 층고에 대응하는 높이를 갖는 것'은 모두 아파트 입주민에게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⁸⁾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 시설이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제공하겠다는 동일한 기술적 과제에 관한 것이고, 이를 구현하는 기술사상의 핵심 역시 각 단위세대의 테라스를 인접한 위아래 층의 단위세대의 테라스와 상하방향으로 중첩되 지 않게 배치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같다(갑 제3호증의 [0008], [0017] 및 [0026], 갑 제 4-1호증의 7면 하단 1행~4행, 19면의 2번째 도면).

- (2) 건축물에서 층고를 정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채광, 개방감 및 구조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사항이다. 선행발명 3은 선행발명 1과 기술분야가 같을 뿐만 아니라 입주민에게 개방감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과제 역시같은데, 선행발명 3에는 테라스의 층고를 '두 개 층의 층고'에 대응하는 높이로 하는 아파트의 배치 구조가 나타나 있다(갑 제6호증의 [0004], [0009] 및 [도 1]). 위와 같은 사정을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을 참조하여 선행발명 1의 '세 개 층의 층고'에 대응하는 높이를 갖는 테라스의 층고를 '두 개 층의 층고'의 높이를 갖는 것으로 변경할 기술적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 (3) 아파트의 설계 과정에서 하나의 평면 구조를 각 층마다 배치 방향을 변경해가면서 다양한 배치 구조를 도출해 보는 것은 통상적인 과정이다. 각 층별로 동일한 평면구조를 갖는 선행발명 3에서도 테라스의 층고를 '두 개 층의 층고'에 해당하는 높이로 하기 위하여 '복층형 마당'과 '슬래브 개방 영역9)'이 교대로 변동되는 배치 구조를 채택하고있다(갑 제6호증의 [0009], [0013], [0014] 및 [도 1, 3, 4]).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하나의 평면 구조를 각 층별로 90도씩 회전시켜 배치하는 방식 대신에 각 층별로 방향을달리하여 교대로 변동되는 배치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테라스의 층고가 '두 개 층의층고'에 대응되는 높이를 갖는 위 차이점 1 구성을 도출해 내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⁹⁾ 슬래브를 타설하지 않는 빈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빈 공간영역(void)'과 동일한 것이다.

고 보이지 않고, 선행발명 1에 이러한 변경을 방해하는 기재나 암시가 있는 것도 아니다.

(4) 나아가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테라스 층고를 '두 개 층의 층고'에 대응하는 높이로 하는 것이 선행발명 1에서 테라스의 층고를 '두 개 층의 층고'에 대응하는 높이로 변경한 것에 비하여 아파트 입주민에게 개방감을 제공하는 효과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나) 차이점 2 검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또한 본 발명의 아파트 구조는 거실의 상부에 위층의 테라스가 위치하고, 상기 테라스의 상부에는 위층의 건물 외벽 바깥의 빈 공간영역이 위치하도록 배치함으로써, 각 단위세대 간에 있어서 거실의 층간 소음문제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으며, 테라스에서의 사생활 보호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3호증의 식별번호 [0017]). 해당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거실'의 상부에 위층의 테라스가 위치한 것은, 각 단위세대의 '거실' 상부에 거주자의 활동이 적은 위층의 테라스를 배치하고, '거실'의 하부에 빈 공간영역을 배치함으로써 거실에서의 층간 소음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 (2) 선행발명 1은 각 단위세대의 '침실' 상부에 위층의 테라스를 배치하고, '침실' 의 하부에 빈 공간영역을 배치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갑 제4-1호증의 7면 하단 1 행~4행, 19면의 2번째 도면). 선행발명 1도 입주자의 활동이 적은 위층의 테라스와 아래층의 빈 공간영역 사이에 특정 실내 공간(침실)을 배치함으로써 이러한 특정 실내 공간(침실)에서의 층간 소음을 감소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선행발

명 1은 과제해결수단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3) 다만,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위층의 테라스와 아래층의 빈 공간영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특정 실내 공간이 '거실'인지 아니면 '침실'인지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1에서 위층의 테라스와 아래층의 빈 공간영역사이에 위치한 특정 실내 공간인 '침실'에는 작업실을 의미하는 '스튜디오'를 포함하고 있는데(갑 제4호증의 2의 11면 도면), 이러한 작업실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작업할 수 있고 작업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 (4) 고유한 문화,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소음에 민감하거나, 소음을 주로 발생시키는 공간에 대한 인식은 각 지역, 계층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시대적 유행 등을 고려하여 선행발명 1의 위층의 테라스와 아래층의 빈 공간영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침실'을 가족이 모여 활동하는 공간인 '거실'로 변경할 기술적 동기가 있고, 이러한 용도 변경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다.
- (5)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거실'의 상부에 위층의 테라스가 위치하고 '거실'의하부에 빈 공간영역이 위치한다는 것 이외에 '거실'로 전달되거나, '거실'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을 차단하는 별다른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거실'에서의 층간 소음 저감 효과가 선행발명 1의 '침실'을 '거실'로 변경함으로써 나타나는 층간 소음 저감 효과에 비해 예측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근거도 없다.
- (6) 선행발명 1에서 테라스 아래에 위치하는 '침실'을 '거실'로 변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층간 소음은 각 세대 바로 위층의 생활 소음뿐만 아니라 옆 라인 세대의 생활소음도 전달되므로, 층간 소음이 수직으로 접하는 공간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층간 소음은 위층 거주자의 생활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실'에서 발생하는 층

간 소음이 항상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같은 배치 구조로 인한 '거실'로부터의 층간 소음 감소 효과가 선행발명 1과 비교하여 현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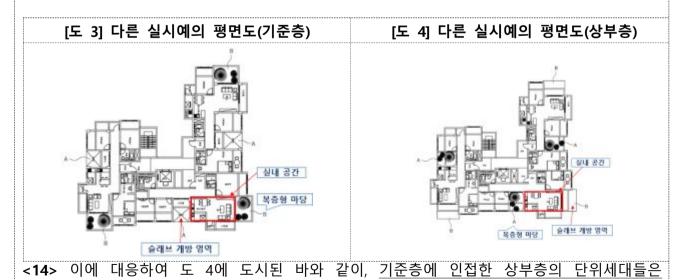
다) 차이점 3 검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이점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1) 선행발명 3의 다음과 같은 명세서 기재 및 도면에 의하면, 선행발명 3에는 각 증별로 배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인 '거실과 주방/식당'에 인접하게 '복증형 마당'과 '슬래브 개방 영역¹⁰⁾'을 배치하되, 각 증별로 이러한 '복증형 마당'과 '슬래브 개방 영역'이 교대로 변동되는 배치 구조가 나타나 있다(갑 제6호증의 [0009], [0013], [0014] 및 [도 1, 3, 4]).

선행발명 3

<13>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u>기준층의 단위세대들은 현관부 근처 제1베이(A)는 슬래브를</u> 개방하여 인접한 아래층 단위세대에게 복층형 마당(G2)을 제공하고, <u>거실부 근처의</u> 제2베이(B)는 인접한 위층의 단위세대의 슬래브를 개방하여 복층형 마당(G1)을 제공받는다.



10) 이 사건 특허발명의 '빈 공간영역(void)'과 동일한 것이다. 이하 같다.

현관부 근처의 제1베이(A)를 복충형 마당으로 형성하기 위해 그 윗충의 슬래브를 개방하고, 거실부 근처의 제2베이(B)는 기준충의 복충형 마당을 위해 슬래브를 개방한 형태를 취한다. 여기서 개방되는 슬래브는 도시된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제거되어, 슬래브를 개방한 단위세대의 발코니로 활용된다.

선행발명 3의 이러한 배치 구조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배치 구조와 비교해볼 때, '거실' 공간 유무에서만 차이만 있을 뿐 테라스[복흥형 마당] 및 빈 공간영역[슬래브 개방 영역]이 각 흥별로 배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거실과 주방/식당]'에 인접하여 '테라스[복흥형 마당]'와 '빈 공간영역[슬래브 개방 영역]'을 배치하는 점에서는 그 배치 구조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2) 한편, 선행발명 1은 테라스의 층고를 높여 빛의 투과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에게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갑 제4호증의 1의 7면 하단 1행~4행, 19면의 2번째 도면). 선행발명 3 역시 공동주택에 복층형마당과 같은 개방된 실외공간을 형성하여 닫힌 공동주택 공간에 개방감을 부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형 건물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한다(갑 제6호증의 [0004]). 이처럼 선행발명 1, 3 모두 공동주택의 입주민에게 개방감을 부여할 수 있는 층고가 높은 테라스 [복층형마당]를 갖는 평면 배치 구조를 제공한다는 동일한 기술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선행발명 1, 3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층고를 높일 수 있는 테라스의 배치 구조의 개선과 관련하여 양 발명의 기술 내용을 서로 참작하고 결합해 볼 충분한 동기가 있다.
- (3)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서 침실과 테라스, 빈 공간영역의 각 증별 배치 위치를 시계방향 또는 반 시계방향으로 변동시켜 배치함에 있어서 코어 부분을 중심으로 배치위치를 변동시키지 않고, 선행발명 3과 같은 배치 구조를 적용하여 침실과 테라스, 빈 공간영역을 각 증별로 배치 위치가 고정된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

에 인접하게 배치한 후, 이러한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을 중심으로 배치위치를 시계방향 또는 반 시계방향으로 변동시키는 구조로 변경하여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같은 구성을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

(4)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구성요소 4, 5와 같은 구성을 채택하여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의 배치 위치가 각 층별로 고정되게 하여 배관 설치 등 건축 시공의 용이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3호증의 [0026]). 그런데 이와 같은 효과는 선행발명 3의 각 층별로 배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인 '거실과 주방/식당'에 인접하게 '복층형 마당'과 '슬래브 개방 영역'을 각 층별로 교대로 배치하는 구성에서도 당연히 나타난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11)

원고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이 구성요소 4, 5를 채택함으로써 한 층에 여러 세대를 연접하여 배치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건설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선행발명 1로는 위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의하면, 이러한 연접 배치 구조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형성된 '코어'를 중심으로 하여 그 바깥쪽에 복수개의 단위세대가 배치가 되는 구조임을알 수 있다(갑 제3호증의 [0036]~[0039]). 즉,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2] 또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형성된 '코어'가 아파트 평면의 일측면 또는모서리에 형성되는 구조일 때 한 층에 여러 세대를 연접 배치할 수 있는 연접 배치가가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에는 하나의 단위세대의 평면 구조를 이루는 구성요

¹¹⁾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청구범위 해석과 관련된 주장('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공간' 및 '인접'에 대한 해석)도 하고 있으나,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심결과 관련하여 문제삼은 청구범위 해석을 판단의 기초로 삼은 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소 중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 '거실', '테라스' 및 '빈 공간 영역'의 배치 구조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연접 배치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구성인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형성된 '코어'의 배치 구조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단위세대에서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형성된 '코어'가 다른 실내 공간에 둘러 싸여 연접 배치가 어려운 아파트 평면 구조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한 층에 여러 단위세대를 연접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구성이라고 주장하는 관련 구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3에도 이미 나타나 있는 공지된 기술적 사상일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3에도 한 층에 여러 단위세대를 연접 배치할수 있는 평면 구조가 나타나 있다(갑 제6호증 [도 3, 4, 5]).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에 바치 구조를 적용하면 한 층에 여러 단위세대를 연접하여 배치할 수 있는 평면 구조를 쉽게 도출해 낼 수 있고, 이러한 연접 배치로 인한 효과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통한 건설비용 절감 효과도 당연히 나타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검토결과의 정리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 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을 '주방'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을 '주방'으로 한정한 반면,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3의 대응 구성은 '주방'과 '거

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예컨대 상기 주방/식당(230)은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 즉, 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방 중 어느 하나이어도 무방한데, 각 층별로 그 배치위치가 고정된다는 점에서 아파트 전체를 관통하는 배관 등이 설치되는 주방/식당인 것이 바람직하다."(갑 제3호증의 [0026])라고 기재되어 있다. 해당 기재에 의하면, 각 층별로 배치위치가 고정되는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을 '주방'으로 한정한 것은 주방에서 아파트 전체를 관통하는 배관이 수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관 시공의 용이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선행발명 3은 각 층별로 배치위치가 고정되는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이 아파트 전체를 관통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을 포함하고 있다(갑 제6호증의 [도 3, 4]). 선행발명 3의 배치 구조 역시 배관 시공의 용이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행발명 3에서 각 층별로 배치위치가 고정되는 '다른 용도를 갖는 실내 공간'은 '주방'뿐만 아니라 '거실'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선행발명 3의 [도 3, 4]를 보면 '주방'과 '거실'이 바로 인접하여 상호간에 개방되어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방'과 '거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선행발명 3에서 '주방'과 '거실'이 실질적으로 다른 실내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입주 후에도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각각의 실내 공간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행발명 3의 '거실'을 '주방'으로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중 이 사건 제2, 3항 발명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2, 3항 발명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